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적소·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직권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강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장관이 요청할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특별한”을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6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를 “제11조제1항제3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을 각각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을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의결의 종류는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부적격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법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 4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동의 한 경우 강임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강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따른 교육평가위원회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0조의2 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7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8 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 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 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 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 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제 9조-----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 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국가공무 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거나 전보하는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면 제할 수 있다.	<삭 제>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교 부장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삭 제>

마친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
자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
다.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후단 신설>

제9조(역량평가) ①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
----- 인사혁신처장
에 요청하는 ---. 이 경우 인

② ~ ⑤ (생략)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 5. (생략)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생략) 8. <u>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u>	<u>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1조제1항제3호·제5호 ----- ----- ----- -- 7. (현행과 같음) 8. <u>고위공무원단</u> ----- ----- ----- ----- ----- ----- ----- ----- -----
--	---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생략)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 경우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우수, 보통 또는 미흡 중 하

9.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

-----.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
-----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
-----.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의 세부 내용, 제3항에 따른 교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과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

③ (생략)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⑥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의결
하며, 의결의 종류는 적격, 조건
부 적격, 부적격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부적격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법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동의 한 경우 강임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강임을 적용하지 아니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다.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 법

제70조의2제1항-----
-----.

1. _____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법 제70조의2제1항

2. -----

.

법 제70조의2제1항

②

법 제70조의2제1항

수 있다.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 법 제70조의2제1항-----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법 제70

조의2제1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 8327